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 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신설(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동물학대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상 처벌이 불가능함.

실제로 반려견 놀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 독극물이나 위해물질을 살포하는 등 동물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학대 미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¹⁾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사망·

1)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시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동물학대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동물학대가 아닌 재물손괴 미수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였음(뉴스, “‘학대 미수’ 처벌 없고 재물 취급 받는 반려동물...근본 대책 없나”, 2026.2.22.)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등 미수범 처벌 공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학대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한 미수죄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²⁾은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아동살해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⁴⁾은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 2)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형법」 5)은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은 매장유산 은닉처분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정 형량이 동물학대죄와 유사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례가 존재함.

이처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동물학대죄와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죄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5)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도굴 등의 죄)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에 따른 미수죄 적용 벌칙 】

	금지사항	형량
1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6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미수범의 처벌 여부는 법리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해성이 어느 정도 중대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기본적

으로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함.

일반적으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률이 규정한 금지행위의 행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비록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불법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⁷⁾.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동물학대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의 필요성도 동물학대 행위의 사회적 위해성, 현행 처벌 체계와의 균형,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생명존중 및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죽음·상해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에 한하여 미수범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83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u><신설></u> 2. ~ 14. (생략) ③ ~ ⑥ (생략) <u><신설></u>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각 호의</u> ----- ----- ----- <u>1의2.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u> 2.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문의처

02)6788-5425